제 1999-04 호

#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금광농협 개산주유소

2. 성명(대표자): 조합장 (생년월일: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외개산길 55

(전화번호: 0316743773 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지하탱크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4기 총용량:100,000.00 &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 :

[별첨 참조]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부식방지처리, 누출방지탱크제작, 누출측정기설치

나. 설치내용: 도장법, 탱크실설치, 누유검사관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1999년 12월 3일

경기도 안성적장(5

# <변경 사항>

일	자	내용	확	인

# <행정처분일자>

일	자	내 용	확	인

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				
그 밖의 주요내용 :	1.토양오염도 검사는 준공완료 시점에서 최초(완공후 6개월내) 검사후 15년까지 5년,10년,15년 되는해 각각 1회 검사(검사가 종료된 때부터 매 2년에 1회) 2. 누출검사는 완공후 10년이 지난때부터 매 8년이 되는해에 1회 실시 3. 수시검사는 명의변경, 폐쇄, 교체 사유가 발생되기 3개월전에 검사 실시 4.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토양오염 유발시설 주변일일점검, 주변환경 정리정돈 철저			

### 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제1탱크	등유 (TPH)	30,000.00 l	1	1999/11/24	지하탱크
제2탱크	경유 (TPH)	30,000.00 l	1	1999/11/24	지하탱크
제3탱크	휘발유 (TPH)	30,000.00 l	1	1999/11/24	지하탱크
제4탱크	등유 (TPH)	10,000.00 ℓ	1	1999/11/24	지하탱크

### <참고사항>

일	자	내용	확	인